

##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제정	1997·10·1	규칙	제1039호
개정	1998·9·23	규칙	제1054호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2·9·2	규칙	제1146호
개정	2006·5·4	규칙	제1197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07·2·15	규칙	제1206호
전문개정	2008·2·1	규칙	제1221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09·7·30	규칙	제1238호
개정	2010·7·26	규칙	제1248호
일부개정	2012·4·20	규칙	제1281호
일부개정	2014·8·22	규칙	제1314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4·22	규칙	제133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6·22	규칙	제1379호
일부개정	2019·7·1	규칙	제1393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0·5·1	규칙	제14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 시설물의 이용료와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

1. “관광지”란 천동관광지, 다리안 관광지, 온달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를 말한다.(도담삼봉 유원지, 대강·소선암 오토캠핑장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이란 관광지 등에 있는 유료이용 시설물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의무경찰·경비교도

대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시설이용료”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입장료”란 관광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① 관광지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비지정 시설물의 시설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주차장 이용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 별표 1-1을 따른다. 다만, 온달관광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시설이용료 등은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 ② 시설이용료 등은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징수하며,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 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그 날 징수한 시설이용료 등은 다음 날 오전까지(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단양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그 날 징수한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보고는 일일근무일지로 한다.

**제5조(예약 및 예약금의 징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약을 받고 예약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② 예약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다음달분 예약과 예약금을 받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예약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시설입장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천동물놀이장을 이용하는 4세 이상인 사람과 온달관광지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 2020·5·1>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인 영유아와 65세 이상인 사람
4. 학술조사나 관광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10. 「도로교통법」에 따라 임무수행을 위하여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11.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중 “유효기간”이 날인된 마일리지 실적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5·1]

**제7조(시설이용료 등의 감경)** ① 군수는 시설 이용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관광 성수기(7월~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이용 시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자녀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5·1]

**제8조(환불 및 배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환불하거나 배상한다. <개정 2020·5·1>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1>

**제9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특례)** 군수는 단양군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 및 영화 촬영을 할 때 영상촬영장 사용을 따로 협약하면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1>

부칙 <2016·4·22 조례 제133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2 규칙 제1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규칙 제1393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 규칙 제1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5.1>

시설이용료(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관광지	시설물		이용료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65세이상	성수기 (7~8월)	비성수기		비 고	
										평일	공휴일		
입장료	온달 관광지	개인			2,500	2,000	1,500	1,500					
		단체			2,000	1,500	1,000	1,000					
시설 사용료	다리안 관광지	원두막		26동	35,000							※ 주차요금 포함	
		야영장 (천동포함)	4*6	56동	35,000								※ 주차요금 포함
			5*7	22동	40,000								※ 주차요금 포함
		돔하우스			60,000								※ 주차요금 포함
		기타시설	공연무대	1개소	60,000								※ 3시간 기준(초과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 주차요금별도
			체육시설	1개소	30,000								
			잔디광장	3개소	100,000								※ 1일 8시간 기준/1회, 1잔디 광장당 ※ 주차요금별도
	생태그물놀이시설		1개소		10,000	8,000	6,000					※ 1회 / 2시간 ※ 주차요금포함	
	온달 관광지	촬영장 이용료	영화		2,000,000								※ 1일(24시간 기준)
			드라마		1,000,000								
		강통열차			2,000								※ 1회 탑승
	천동 관광지	물놀이장	개인		6,000	5,000	4,000						※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도 불구하고, 단양군민 사 용료 100분의50 감면
			단체		5,000	4,000	3,000						
오토 캠핑장	천동, 대강, 소선암								30,000	20,000	30,000	※ 천막 추가 이용시 야영 장 이용료를 따름	
도담삼봉	황포돛배	왕복		3,000	2,000							※ 도담리 거주 주민 무료	
	삼봉스토리관			2,000	1,000							※ 주차요금 별도	

※ 1일 체류(원두막, 야영장, 돔하우스, 오토캠핑장): 사용당일 낮12시부터 다음날 낮12시까지

[별표 2]

시설이용료 등의 환불 및 배상기준(제9조 관련)

기 준	적 용	환불 및 배상 기준	비 고
사용자가 책임 저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이용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80% 공제 후 환불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 간을 적용하되 약 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 음의 기간을 적용 함.
관리자가 책임 저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이용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1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3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5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전액배상	· 여름시즌: 7.15~8.24 * 주말: 금요일· 토 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천재지변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 -예약금 전액 환불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에는 이용당일 취 소로 봄.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주 차 권

(전면)

제 호  관광지 주차권(원부)  차 종: 주차기간: 당 일.체 류 요 금: 원정  징 수 자: . . . (인)  단 양 군 수	제 호  관광지 주차권(영수증)  차 종: 주차기간: 당 일.체 류 요 금: 원정  . . .  단 양 군 수	관광지 전경 사진
---	---	--------------

- 바탕색: 연두색                      - 글 씨: 흑 색
- 규 격: 160mm×70mm              - 지 질: 아트지 100mg/m<sup>2</sup>

(뒷면)

단양군관광안내도
----------

(추 6)



[별지 제2호 서식]

(야영장·야영데크) 이용권

(전면)

제 호	제 호	
관광지(야영장·야영데크)이용권 (원 부)	관광지(야영장·야영데크)이용권 (영 수 증)	
이용기간: 월 일 - 월 일 ( 박 일)	이용기간: 월 일 - 월 일 ( 박 일)	관광지 전경 사진
금 액: 원정 · · ·	금 액: 원정 · · ·	
징 수 자: (인)	· · ·	
단 양 군 수	단 양 군 수	

- 바탕색: 연두색, 글씨: 흑색, 규격 : 160mm×70mm, 지질: 아트지 100mg/m<sup>2</sup>

(뒷면)

<p>단양군관광안내도</p>
-----------------

[별지 제3호 서식]

원 두 막 이 용 권

(전면)

제 호	제 호	
관광지원두막이용권 (원부) ( 실)	관광지원두막이용권 (영수증) ( 실)	관광지 전경 사진
이용기간: - 시~ 분 - 시~ 분 - 당 일	이용기간: - 시~ 분 - 시~ 분 - 당 일	
요 금:           원정	요 금:           원정	
징 수 자:           (인)		
단 양 군 수	단 양 군 수	

- 바탕색: 연두색                   - 글 씨: 흑색
- 규 격: 160mm×70mm           - 지 질: 아트지 100mg/m<sup>2</sup>

(뒷면)

단양군관광안내도
----------

[별지 제4호 서식]

입 장 권

(전면)

제 호  ( ) 관광지 입 장 권 ( 원 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0 auto;"></div>  금 원 징 수 자 (인) . . . .  단 양 군 수	제 호  ( ) 관광지 입 장 권 ( 부 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0 auto;"></div>  금 원 징 수 자 (인) . . . .  단 양 군 수	제 호  ( ) 관광지 입 장 권 ( 영수증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0 auto;"></div>  금 원 징 수 자 (인) . . . .  단 양 군 수
--	--	--

: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 작성

- 바탕색: 연두색
- 글 씨: 흑색
- 규 격: 160mm×70mm
- 지 질: 아트지 100mg/m<sup>2</sup>
- 영수증 바탕: 관광지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단 체 입 장 권

(전면)

제 호 ( )관광지 단 체 입 장 권 ( 원 부 )				제 호 ( )관광지 단 체 입 장 권 ( 부 표 )				제 호 ( )관광지 단 체 입 장 권 ( 영 수 증 )			
신청인	성명			신청인	성명			신청인	성명		
	주소				주소				주소		
구 분	인원	입장료	금액	구 분	인원	입장료	금액	구 분	인원	입장료	금액
어 른				어 른				어 른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군 인				군 인				군 인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계				계				계			
입장단체명				입장단체명				입장단체명			
징수자 (인)		단 양 군 수		징수자 (인)		단 양 군 수		징수자 (인)		단 양 군 수	

- 바탕색: 노랑색, 글씨: 검정색, 규격: 200mm×150mm, 지질: 80mg/m²

입 장 권

(뒷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지 안의 모든 시설물을 소중하게 아껴 쓰시다.</li> <li>○ 오물쓰레기는 휴지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건전한 행락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를 하지 맙시다. (음주추태, 고성방가, 집단가무, 오물방치, 방뇨, 자연훼손 등)</li> <li>※ 입장료 6세 이하 65세 이상 면제</li> <li>※ 단체 30명 이상</li> </ul>
--	--

(추 6)

[별지 제6호 서식]

오토캠핑장 이용권

(전면)

제 호  오토캠핑장 이용권 (원 부)  이용기간: 월 일 - 월 일 ( 박 일) 금 액: 원정  . . .  징 수 자: (인)  단 양 군 수	제 호  오토캠핑장 이용권 (영 수 증)  이용기간: 월 일 - 월 일 ( 박 일) 금 액: 원정  . . .  단 양 군 수	관광지 전경 사진
--	--	--------------

- 바탕색 : 연두색, 글씨 : 검정색, 규격 : 160mm×70mm, 지질 : 아트지 100mg/m<sup>2</sup>

(뒷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지 안의 모든 시설물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관광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규격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관광지 안에서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li> </ul>
--	---